

[부표]

법 무 사 보 수 표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I.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임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5,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05,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80,000원	+	2억원 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4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4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2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40,000원
(4) 말소등기	80,000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 등기,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5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8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5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II.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2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2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53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71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7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22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82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9,02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9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55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9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9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9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9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까지	16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6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81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41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1/10,000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8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8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5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2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10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Ⅳ. 등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채권액(채권최고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9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9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7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설정등기

채권액(채권최고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2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2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8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4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4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의 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V.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5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7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1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32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VI.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감정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6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6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0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6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0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7,0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1,0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100억원초과		27,0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상소장), 항고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회생채권신고서·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산신청서, 지급명령, 조정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3천만원까지	560,000원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56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730,000원	+	2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2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3천만원까지	260,000원			
3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60,000원	+	3천만원초과액의	1/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277,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7,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27,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27,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 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기본보수		
			40,000원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23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3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6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 기준		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5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4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40,000원

X.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기본보수
(1) 개별적 상담·자문(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건당 150,000원(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2) 계속적 상담·자문(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6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1)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 KTX, SRT 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80,000원까지)
(2)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80,000원, 4시간 초과 160,000원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 <참 고>
- 동일인 보증서 작성은 200,000원을, 본인확인서면 작성은 120,000원을 기본으로, 대상인원 1인 또는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 또는 부동산 1개마다 30,000원 가산(「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제5항)
 - 기타 가산, 감액 등 특례는 「법무사보수기준」 참조